

2026년 대비 세무회계 2급 정오표(26.05.11)

구분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
국세기본법																									
25 밑에서 1번째, 3번째	근로자의 날일 때에는	노동절일 때에는																							
34 밑에서 9번째	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.....	노동절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절의 다음날을.....																							
44 위에서 21번째	(5)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(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)	(5)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(지정 납부기한의 가산세로 한정한다)																							
법인세법																									
138 밑에서 10번째	벌금, 과태료, 강제징수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.	벌금, 과태료, 가산세, 강제징수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.																							
266 위에서 7번째	- 산출세액 = (18,000,000 + 200,000,000 × 19%) × (6/12) = 28,000,000	- 산출세액 = (20,000,000 + 200,000,000 × 20%) × (6/12) = 3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
286 밑에서 1번째	해설 : 18. 100분의 255	해설 : 18. 100분의 25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세법																									
297 밑에서 10번째	과세표준의 9% 18백만 원 + 2억 원 초과 19% 37.8억 원 + 200억 원 초과 21% 625.8억 원 + 3,000억 원 초과 24%	과세표준의 10% 20백만 원 + 2억 원 초과 20% 39.8억 원 + 200억 원 초과 22% 655.8억 원 + 3,000억 원 초과 25%																							
325 밑에서 3번째	② 2주택자 소유자의 보증금	② 1주택자 소유자의 보증금																							
364 밑에서 1번째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5">소득(세액)공제대상자의 공제요건 검토</th> </tr> <tr> <th>보험료</th> <th>의료비</th> <th>교육비</th> <th>기부금</th> <th>신용카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령요건</td> <td>○</td> <td>×</td> <td>×</td> <td>×</td> <td>×</td> </tr> <tr> <td>소득요건</td> <td>○</td> <td>×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소득(세액)공제대상자의 공제요건 검토					보험료	의료비	교육비	기부금	신용카드	연령요건	○	×	×	×	×	소득요건	○	×	○	○	○	교육비 소득요건을 X 로 변경
구분	소득(세액)공제대상자의 공제요건 검토																								
	보험료	의료비	교육비	기부금	신용카드																				
연령요건	○	×	×	×	×																				
소득요건	○	×	○	○	○																				
366 위에서 2번째	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함.	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함.																							
375 밑에서 10번째	⑨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,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공제 가능함.	⑨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함.																							
368	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	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																							

밑에서 1번째	상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)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한다.	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)가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한다. <나이요건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1.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분: 9세 이상 2.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분: 10세 이상 3.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분: 11세 이상 4.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분: 12세 이상 5. 2030년 1월 1일 이후 : 13세 이상 </div>
369 위에서 2번째	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....	나이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....
369 위에서 9번째, 10번째 삭제	*7세 이하 :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8세 이상 : 자녀세액공제	*7세 이하 :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8세 이상 : 자녀세액공제
386 밑에서 2번째	①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8세 이상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인원부터 한 명당 30만 원씩 공제된다	①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자녀세액공제 나이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인원부터 한 명당 40만 원씩 공제된다
388 밑에서 10번째	①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인 자녀가 2명인 경우 5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	①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모두 15세인 2명인 경우 5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부가가치세법		
514 밑에서 7번째	②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 가액(과세+면세)이 1억 원 이상(24.7.1. 이후는 8천만 원)인 개인사업자	②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 가액(과세+면세)이 8천만 원인 이상인 개인사업자